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2026년 매립가스시설 블로워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일반규정) ① 본 과업은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과업수행을 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 대리인이나 기술진 또는 참여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사회통념상 불성실 또는 부적정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인에 대하여 감독자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역무) 계약상대자는 중앙지사 매립가스 터보블로워 #B,C 분해점검 보수공사에 관련된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역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문서에 명시된 공사의 수행
2.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자재 규격 및 설치 시방 준수
3. 기자재 제작 및 설치, 분해점검 및 조립, 각종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 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4. 공사현황보고(공정, 기성 등)
5. 정비대상 자재의 제작, 공급, 설치에 대한 품질관리와 현장 경비 및 정리
6. 기타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 및 본 보수공사의 완전한 성능을 보장하는 필요한 역무의 수행

제4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제5조(공사의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제3조의 의무 또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발주자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계약 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착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발주자 서식 참조)를 착공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1부
2. 현장대리인계 1부
 (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3. 공사예정 공정표 1부
4. 안전관리 계획서 1부
5.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1부
6. 사진첩 1부(공사 착공 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서약서 1부
8.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보안서약서, 근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제7조(보안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통제구역 출입 시 보안각서와 보호구역(제한·통제구역) 출입 신청/승인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통제구역에 출입할 때에 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 전에 비치된 출입관리대장에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시간 등의 출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통제구역 출입 시 휴대용 보조기억저장매체의 사용 및 반입을 통제(보

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장치, 공간 등)해야 하며, 필요시 책임자 승인 후 반입한다.

④ 통제구역 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8조(현장대리인의 역무 및 교체) ①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에 사회통념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제9조(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①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0분의 2를 적용한다.

③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 다음 사항을 하자보증하여야 한다.

1. 점검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6.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④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계약 목적물에서 시공자의 결함, 설치불량 등의 원인에서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⑤ 하자보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계약일반조건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기일 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연1회 하자(최

종)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사고 및 피해 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끼친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작업중 소음, 먼지 및 악취, 공사현장으로부터 오염, 하수,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③ 본 공사로 인하여 부지 내 열병합 발전시설, 건축물 및 구조물, 지하 매설물 및 기타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문서처리)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문서를 제출하거나 준공대금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공 및 준공일)

① 준공일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이내로 한다.

② “준공”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전반에 걸쳐 설계서, 계약문서 및 기타 약정대로 모든 역무를 수행한 후 공사감독원을 경유(조서 날인), 발주자의 대외문서접수계통에 준공계를 접수한 날을 의미한다.

③ 준공검사 시 경미한 누락이나 결함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적정기간 내에 미비나 결함사항을 교정하고자 약정한 경우에는 준공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준공 시 제출도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시 제출해야 할 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1부 (당사 소정양식)
2. 준공내역서 1부 (공사비 증감 발생시)
3. 임금체불확인서 1부 (당사 소정양식)
4.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당사 소정양식)
5. 고용·산재보험 납입증명원 1부
6. 준공사진첩 1부
7. 기술정산서(시험성적서, 교체부품 세부내역 등)
8. 감독자가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보안서약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

제15조(기타) ①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 표지판 등은 계약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각종 시험기구를 비치하고 시험검사의 실시는 각종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만일 시험성적서 등의 기술사양이 공사설계서의 공사대상 혹은 작업내용과 상이할 경우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행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 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⑦ 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⑧ 각 기기별 기술정산내용 및 점검보수 사항은 발주자의 정기점검 보수지침서에 따른다.